

2017년 전라남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전라남도
JeollaNam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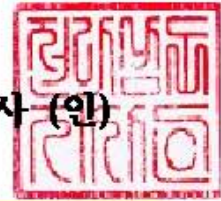
목 차

I . 재정공시 안내	1
II . 공통공시 총괄	2
III . 예산규모	
◆ 세입예산	3
◆ 세출예산	4
◆ 중기지방재정계획	5
◆ 지역통합재정통계	6
IV .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7
◆ 재정자주도	8
◆ 통합재정수지	9
V . 재정운용계획	
◆ 성인지 예산현황	11
◆ 주민참여예산현황	12
◆ 성과계획서	14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5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6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18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

2017년 전라남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28.

전라남도지사 (인)



- ◆ 우리 도의 '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74,293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5,44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83,552억원)보다 9,259억원이 적습니다.
 - * 유사단체 : 9개 광역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0,504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은 42,992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616억원입니다.
- ◆ 우리 도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1.25%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5.37%입니다.
- ◆ 우리 도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063억원의 적자입니다.
 - *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가 작년 137억원 흑자에서 2,063억원 적자로 전환한 사유는 기금의 용자지출 증가(1,374억) 및 공기업특별회계가 기금으로 전환되면서 순세계잉여금(2,318억원)이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임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도의 재정은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낮지만 재정운영에는 큰 어려움 없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정보공개>재정운영>지방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예산담당관실 임혜린(061-286-2543)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전라남도			유사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74,293	68,849	5,444	83,552	77,605	5,947
	세 출 예 산	74,293	66,849	5,444	83,552	77,605	5,947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21.25	18.35	2.9	38.26	35.93	2.33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35.37	33.74	1.63	49.11	47.28	1.83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2,063	138	△2,201	3,393	912	2,48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계획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과 계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 산 편 성 기 준 별 운 영 상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단체 : 9개 광역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우리 도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429,337	5,711,221	662,288	1,055,82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6,173,333	6,130,973	6,671,298	6,884,896	7,429,33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857,083	100	5,041,363	100	5,473,991	100	5,555,583	100	5,711,221	100
지 방 세	712,000	14.7	739,000	14.7	843,000	15.4	928,000	16.7	983,000	17.2
세외수입	190,430	3.9	72,625	1.4	61,604	1.1	74,878	1.4	67,398	1.2
지방교부세	959,000	19.7	900,000	17.9	884,200	16.2	833,791	15.0	786,100	13.8
조정교부금 등	-	-	-	-	-	-	-	-	-	-
보 조 금	2,915,653	60.0	3,143,326	62.3	3,499,049	63.9	3,544,608	63.8	3,513,110	61.5
지 방 채	80,000	1.7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186,411	3.7	186,138	3.4	174,306	3.1	361,613	6.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우리 도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429,337	5,711,221	662,288	1,055,82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6,173,333	6,130,973	6,671,298	6,884,895	7,429,33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857,083	100	5,041,363	100	5,473,991	100	5,555,583	100	5,711,221	100
일 반 공 공 행 정	447,674	9.2	379,067	7.5	394,106	7.2	417,324	7.5	478,252	8.4
공공질서 및 안전	244,057	5.0	191,414	3.8	241,129	4.4	265,120	4.8	360,046	6.3
교 육	161,831	3.3	160,740	3.2	162,008	3.0	183,889	3.3	193,006	3.4
문 화 및 관 광	319,857	6.6	318,604	6.3	292,395	5.3	311,265	5.6	309,229	5.4
환 경 보 호	408,041	8.4	419,689	8.3	467,326	8.5	458,580	8.3	441,801	7.7
사 회 복 지	1,154,298	23.8	1,445,983	28.7	1,590,625	29.1	1,561,526	28.1	1,702,776	29.8
보 건	66,916	1.4	76,121	1.5	92,609	1.7	117,509	2.1	81,852	1.4
농 립 해 양 수 산	1,027,628	21.2	1,050,973	20.8	1,106,554	20.2	1,075,062	19.4	1,056,489	18.5
산 업 · 중 소 기 업	78,646	1.6	78,475	1.6	120,497	2.2	129,627	2.3	168,554	3.0
수 송 및 교 통	267,042	5.5	258,299	5.1	270,937	5.0	300,626	5.4	300,176	5.3
국 토 및 지 역 개 발	313,060	6.4	277,814	5.5	336,154	6.1	311,526	5.6	316,292	5.5
과 학 기 술	1,140	0.1	1,388	0.1	1,095	0.1	5,366	0.1	6,956	0.1
예 비 비	55,497	1.1	55,348	1.1	57,041	1.0	56,041	1.0	61,799	1.1
기 타	311,395	6.4	327,446	6.5	341,516	6.2	362,122	6.5	233,993	4.1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905,068	8,065,121	8,188,686	8,446,343	8,647,043	41,252,261	2.3%
자 체 수 입	1,232,656	1,263,270	1,294,839	1,327,086	1,360,227	6,478,078	2.5%
이 전 수 입	4,987,496	5,137,552	5,193,653	5,375,781	5,482,808	26,177,291	2.4%
지 방 채	186,595	188,461	190,345	192,249	194,171	951,821	1.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98,321	1,475,838	1,509,849	1,551,227	1,609,836	7,645,071	1.8%
세 출	7,905,068	8,065,121	8,188,686	8,446,343	8,647,043	41,252,261	2.3%
경 상 지 출	1,581,157	1,592,380	1,631,872	1,676,847	1,740,883	8,223,138	2.4%
사 업 수 요	6,323,911	6,472,741	6,556,814	6,769,496	6,906,160	33,029,123	2.2%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left[\left(\frac{\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 \right)^{\frac{1}{(\text{전체연도 수} - 1)}} - 1 \right] \times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10,579,739	11,547,856	968,121	9.15%
전라남도	6,884,896	7,429,337	544,441	7.91%
전라남도교육청	3,159,451	3,357,455	198,004	6.27%
전남개발공사	307,186	511,997	204,812	66.67%
출자·출연기관	228,206	249,070	20,864	9.14%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공사·공단(1개) : 전남개발공사
- ▶ 출자출연기관(19개) :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재)광주전남연구원, (재)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원, (재)전남테크노파크,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재)전남환경산업진흥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전남문화예술재단, (재)전남여성플라자, (재)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재)전남복지재단, (재)명량대첩축제기념사업회, (재)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재)남도장학회, (재)전남인재육성재단, (재)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 직속/사업소/유관기관)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 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1.2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1.25 (16.3)	5,568,221 (5,568,221)	1,183,185 (907,398)	4,299,210 (4,299,210)	85,826 (0)	0 (361,613)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 2016년도 우리 도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2.1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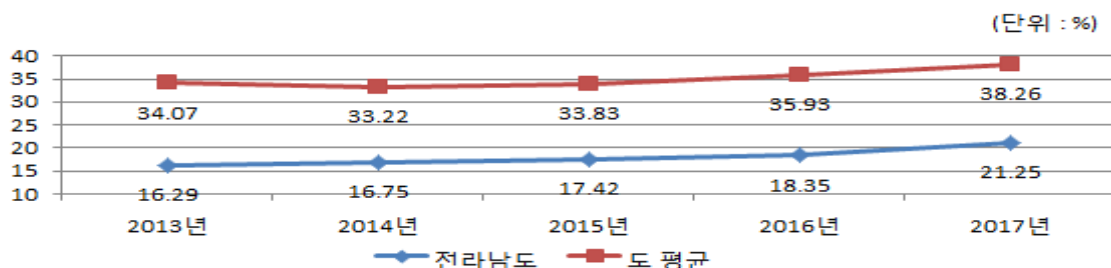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2.11 (14.88)	5,936,172 (5,936,172)	1,312,546 (883,527)	4,476,226 (4,476,226)	147,400 (102,400)	0 (474,019)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16.29	16.75 (13.83)	17.42 (14.49)	18.35 (15.96)	21.25% (16.3)
최종예산	18.88	19.81 (15.00)	21.09 (14.67)	22.11% (14.88)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 우리 도 재정자립도는 21.25%로 9개 광역도 평균 38.26%보다 재정자립도는 낮은 편임. 사유는 산업기반 미흡 등으로 세수기반이 취약하여 자체세입이 낮고, 지방교부세 등 중앙에 의존하는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 채납액 줄이기 등 지방세 징수노력으로 자체세입이 늘면서 전년보다 2.9% 증가함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5.3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5.37 (30.41)	5,568,221 (5,568,221)	1,969,285 (1,693,498)	3,513,110 (3,513,110)	85,826 (0)	0 (361,613)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 2016년도 우리 도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36.4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6.44 (29.21)	5,936,172 (5,936,172)	2,162,871 (1,733,853)	3,625,901 (3,625,901)	147,400 (102,400)	0 (474,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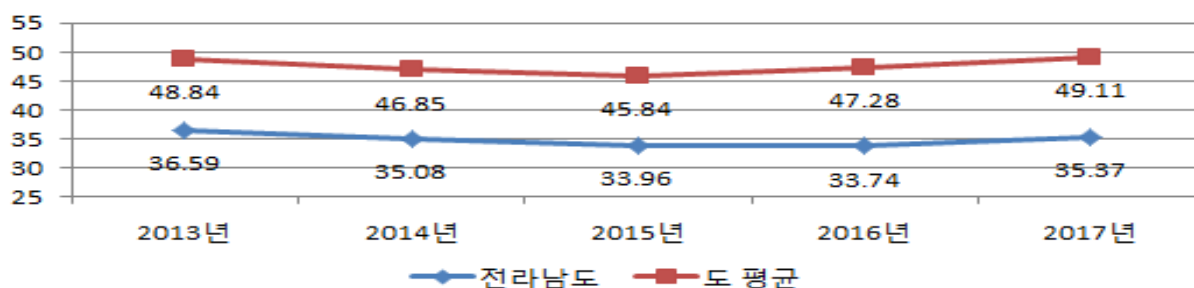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36.59	35.08 (32.16)	33.96 (31.04)	33.74 (31.35)	35.37 (30.41)
최종예산	36.66	37.37 (32.57)	35.52 (29.10)	36.44 (29.21)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단위 : %)



- ☞ 우리 도의 재정자주도는 35.37%로 중앙에서 받는 보조금 의존도가 높아 규모가 비슷한 9개 광역도 평균 자주재원규모 49.11%보다 낮으나, 지방세 징수노력으로 자체세입의 증가로 전년보다 1.63% 증가함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 ☐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우리 도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844,819	6,032,778	193,150	308,271	115,121	96,742	6,147,899	△303,080	△206,339
일반회계	5,445,121	5,337,071	5,000	2,000	△3,000	77,000	5,334,071	111,050	188,050
기타 특별회계	369,561	661,188	2	0	△2	19,742	661,186	△291,625	△271,883
기 금	30,137	34,519	188,148	306,271	118,123	0	152,642	△122,506	△122,506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32,171	△80,191	△145,175	△169,555	△303,080
통합재정수지 2	35,594	36,169	9,202	13,753	△206,339

- ☞ 우리 도의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대비 1,851억원이 증가한 6조 1,479억원이며 세입에서 지출과 순융자를 제외한 재정수지는 3,031억원 적자이고 순세계잉여금 967억원을 포함한 재정수지는 2,063억원 적자임.
- ☞ 순세계잉여금 포함한 재정수지가 작년 137억원 흑자에서 2,063억원 적자로 전환한 사유는 기금의 융자지출 증가(1,374억)로 인한 통합재정규모 증가 및 공기업특별회계가 기금으로 전환되면서 순세계잉여금(2,318억원)이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임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7년도 우리 도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976,291	6,459,566	198,739	167,750	△30,989	442,644	6,428,577	△452,286	△9,642
일반회계	5,592,378	5,786,533	9,963	2,500	△7,463	261,113	5,779,069	△186,691	74,421
기타 특별회계	345,718	448,858	2	0	△2	22,490	448,857	△103,138	△80,648
공기업 특별회계	12,134	211,260	103,816	20,000	△83,816	159,041	127,445	△115,311	43,731
기 금	26,060	12,915	84,958	145,250	60,292	0	73,206	△47,146	△47,146

-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200,475	△178,758	△194,594	△298,941	△452,286
통합재정수지 2	18,920	21,152	63,467	18,120	△9,642

- ☞ 우리 도의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대비 2,139억원이 증가한 6조 4,286억원이며 세입에서 지출과 순융자를 제외한 재정수지는 4,523억원 적자이고 순세계잉여금 4,426억원을 포함한 재정수지는 96억원 적자임.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도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27	668,974
여성정책추진사업	37	228,69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3	411,64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7	28,641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http://www.jeonnam.go.kr/pj/FinanceSelectAll_Home.do?menuId=jeonnam0305040200&YYYY=2016&category=G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전라남도는 모델 2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5,711,221	3,422	2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위 원 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기능)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지 원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기 타	제11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422	
소방본부	소방서 안전센터 및 지역대 환경개선	37	
도로교통과	제설용 트랙터 부착 그레이더 설치 시범사업	28	
친환경농업과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지방비 지원	325	
산림산업과, 산림자원연구소	동백 종자(오일) 제품개발 등	3,032	

4-3.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도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개수	지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계	23	170	462	499	6,373,509	6,026,412	347,097
대변인	1	1	10	3	3,611	3,425	186
도민소통실	1	4	7	7	3,266	3,084	182
감사관	1	1	4	4	503	447	56
여성가족정책관	1	4	13	17	451,272	341,300	109,972
F1대회지원담당관	1	2	5	3	13,096	9,156	3,940
국제협력관	1	4	8	5	6,593	5,794	798
일자리정책실	1	4	10	11	98,776	64,343	34,434
기획조정실	1	8	33	16	257,268	247,880	9,388
도민안전실	1	9	25	17	267,062	268,434	△1,373
경제과학국	1	7	22	17	71,093	65,624	5,469
관광문화체육국	1	10	24	34	204,652	210,741	△6,088
보건복지국	1	10	25	34	1,725,084	1,752,361	△27,277
농림축산식품국	1	15	46	62	991,081	1,010,473	△19,392
해양수산국	1	11	19	28	257,349	260,627	△3,278
건설도시국	1	9	24	28	478,960	487,144	△8,184
자치행정국	1	14	34	28	675,110	544,143	130,967
소방본부	1	17	46	52	363,870	199,573	164,298
의회사무처	1	1	3	5	6,424	12,856	△6,432
농업기술원	1	12	45	24	43,000	52,292	△9,292
지방공무원교육원	1	1	3	2	9,224	4,937	4,288
보건환경연구원	1	2	7	7	2,531	7,104	△4,573
동부지역본부	1	8	16	20	427,280	451,332	△24,052
해양수산과학원	1	16	33	75	16,403	23,344	6,94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1.25	35.37	29.81	21.01	68.39	14.24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전(2013년 이전) 기준 금액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67	167	0
	부단체장	233	233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36	1,649	△187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19	419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26	226	0
	의원국외여비	189	189	0
지방보조금		44,405	40,339	△4,06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6,613	-
공무원 일·숙직비		-	679	-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 자치단체별 기준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등 구체적 내용 설명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및 산출내역

- 단체장 1인 기준액 167,200천원으로 도지사 1명 편성
- 부단체장 1인 기준액 116,600천원으로 행정부지사 1명, 정무부지사 1명 편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및 산출내역

- 예산편성 기준액 1,835백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한액)

▶ 지방의회 관련 경비 기준액 및 산출내역

- 의정운영공통경비 : 의원 1인 예산편성 기준액은 6,100천원이며, 예결특위 위원 1인당 2,000천원 별도 계상이 가능하고, 또한,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7% 범위 내에서 증액편성이 가능

【산출내역】 ① 의원 1인당 : 6,100천원×58명, ② 예결특위 : 2,000천원×20명,
③ 의정활동 증액 : 6,100천원×58명×3.1%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지방의회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의장 기준액 매월4,200천원, 부의장 1인 매월2,100천원, 상임위원장 1인 매월1,300천원 편성

【산출내역】 ① 의장 : 4,200천원×1명×12월, ② 부의장 : 2,100천원×2명×12월,
③ 상임위원장 : 1,300천원×7명×12월, ④ 예결위원장 : 1,300천원×1명×12월

- 의원국외여비 :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로 의원 1인 예산편성 기준액은 2,000천원이며, 25%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하며, 또한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 가능

【산출내역】 2,500천원×58명+145,000천원×30%

▶ 지방보조금 기준액 및 산출내역

- 지방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일정산식에 따라 보조금 총한도액(기준액)을 산정한 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서별 편성한도액 설정 후 예산을 편성

▶ 맞춤형복지제도시행 경비 기준액 및 산출내역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우리 도는 연간 공무원 1인 기준액 1,107천원 편성 가능하며, 2015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15년과 동일하게 편성도 가능

【산출내역】 (맞춤형복지)1,360,000원×4,600명+(복지포인트)300,000원×400명+(건강검진)300,000원×2,300명

▶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 및 산출내역

- 일직비 1일 50천원, 숙직 1야 50천원 또는 60천원(금, 공휴일)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4,297	△305
인건비 절감	0	873
지방의회경비 절감	△1	△51
업무추진비 절감	319	250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6,363	△3,056
지방청사 관리·운영	1,748	1,679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7,043	△12,098
지방세 징수율 제고	10,575	△2,030
지방세 체납액 축소	△4,856	△7,760
경상세외수입 확충	1,898	△922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17	146
탄력세율 적용	90	98
지방세 감면액 축소	△547	△1,630

-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6년에 우리 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 당 없 음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17 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6년에 우리 도가 합동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241
조기집행 우수	1/4분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	100
특화과제	지자체 국민디자인 특화과제	50
합동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1,091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2017 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